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생략) ②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제12조(지도 감독) ①구청장은 자금을 용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감독) ①.....필요시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제14조(세입·세출)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4조(세입·세출) ②.....융자금 및 기타 경비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개정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02. 3. 2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3월 4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3월 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8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2년 3월 12일) 상정
제4차 위원회(2002년 3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 가. 제안이유
 -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 사업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작업이 2001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새주소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일부 동에서 불합리한 새주소 도로명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전을 영등포구지명위원회 조례에 의거 구의회 승인받아 확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새주소 도로명 개정 : 15개 구간
 - 소 로 : 2개 구간
 - 골목길 : 13개 구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민창규)

동 승인(안)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새주소부여사업의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학회의 자문을 구하는 등 도로명 제정을 위해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힘써왔던 사업으로 2001년 11월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746개 새주소도로명이 확정되었으며, 2001년 12월 일부 부적합 도로명에 대한 개정요구가 있어 금년 1월에 구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으로써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주소도로명개정승인(안)

의안 번호	227
----------	-----

제출년월일 : 2002. 3. 4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작업이 2001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새주소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일부 동에서 불합리한 새주소 도로명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구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을 영등포구지명위원회 조례에 의거 구의회 승인 받아 확정하고자 함.

2. 새주소 도로명 제정(개정) 절차

- 주민의견 수렴 ⇒ 동 도로명제정협의회 도로명 부여
- ⇒ 구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구의회 승인
- ⇒ 도로명 제정사항 공고 및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보고

3. 주요골자

- 새주소 도로명 개정 : 15개 구간
 - 소로 : 2개 구간
 - 골목길 : 13개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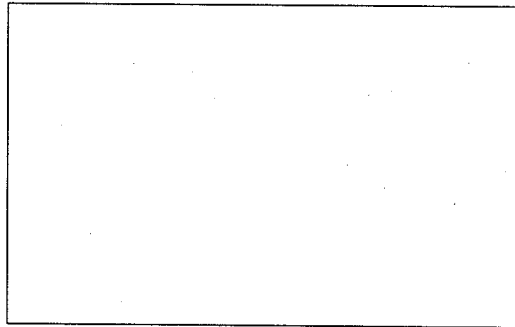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 조례 제9조의2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따로붙임 : 1. 도로명개정 승인조서 각 1부

의안번호	제 호
제출년월일	2002. 03. .

영등포구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명개정 승인조서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년 월 일	2002. 03. .

도로명 부여 현황 및 승인내용

▣ 도로명 부여현황

계	간선도로	보 조 간선도로	보조간선급 소 로	소 로	골목길
773	11	16	2	419	325

▣ 승인대상

계	보조간선급 소 로	소 로	골목길	비 고
15		2	13	

2002년 제1차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연번	구 분	현도로명	개정도로명	개 정 사 유
1	소 로	뚝방마을길	은하마을길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지역으로 뚝방마을이란 길 이름이 판자촌을 연상케 하여 주민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주민 정서에 적합한 은하마을길로 개정함
	골목길	뚝방마을1길	은하마을1길	
		뚝방마을2길	은하마을2길	
		뚝방마을3길	은하마을3길	
		뚝방마을4길	은하마을4길	
		뚝방마을5길	은하마을5길	
2	소 로	중앙시장길	버드나무길	중앙시장과 거리가 먼 주택가는 중앙시장길로 제정되고 중앙시장 건물에 있는 시장통로는 다사랑1길로 제정되어 중앙시장을 찾는 외부인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 중앙시장길은 버드나무가 많았던 지역이므로 버드나무길로 제정하고 ○ 다사랑1길은 중앙시장길로 개정함
	골목길	중앙시장1길	버드나무1길	
		중앙시장2길	버드나무2길	
		중앙시장3길	버드나무3길	
		중앙시장4길	버드나무4길	
	골목길	다사랑1길	중앙시장길	
		다사랑2길	중앙시장1길	
		다사랑3길	중앙시장2길	
		다사랑4길	다사랑1길	

▣ **뚝방마을길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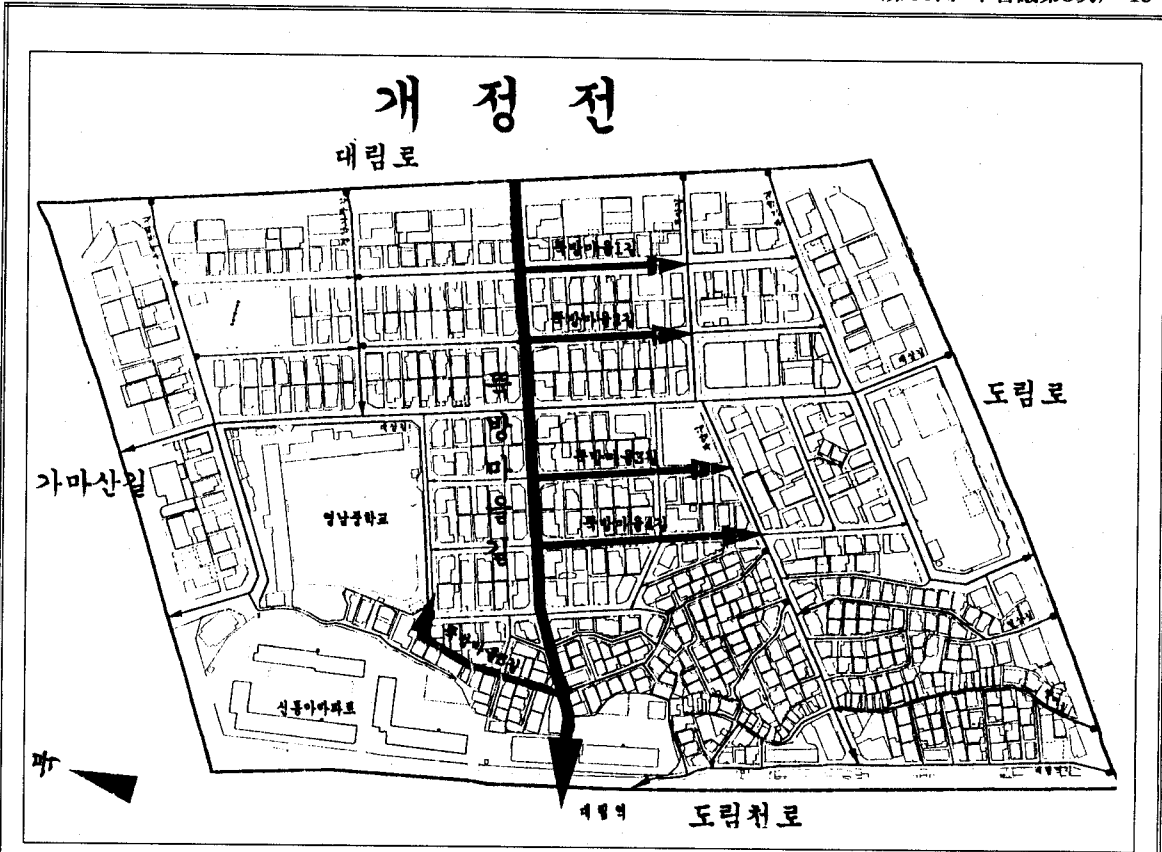
개정내용

- 대림3동 -

구분	현도로명	개정도로명 (안)	대 상 건물수	도로 명판	기점	종점	도 로 명 개정사유
계			140	12			
소 로	뚝방마을길	은하마을길	57	2	대림3동 739-4	대림3동 777	뚝방마을이란 길 이름 이 판자촌을 연상케 하여 주민정서에 적합 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역주민 120명이 연 서하여 은하마을길로 개정 요구
골목길	뚝방마을1길	은하마을1길	13	2	720	719	
	뚝방마을2길	은하마을2길	12	2	722-1	717	
	뚝방마을3길	은하마을3길	13	2	726-1	715	
	뚝방마을4길	은하마을4길	20	2	729-1	714	
	뚝방마을5길	은하마을5길	25	2	797-5	795-4	

소요예산 : 2,579천원(도로명판 : 1,200천원, 건물번호판 : 1,379천원)

도로현황 : 별첨



■ 중앙시장길, 다사랑길 개정(안)

□ 개정내용

- 대림2동 -

구분	현도로명	개정도로명 (안)	대 상 건물수	도로 명판	기점	종점	도 로 명 개정사유
계			292	18			
소 로	중앙시장길	버드나무길	73	3	대림2동 1015-27	대림2동 1082-13	중앙시장 건물이 있던 시장통로가 다사랑1길로 제정되어 있어 중앙시장을 찾는데 혼선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앙시장 상인 등 150명이 연서하여 다사랑1길을 중앙시장길로 개정 요구
골목길	중앙시장1길	버드나무1길	22	2	1057-31	1056-13	
	중앙시장2길	버드나무2길	19	2	1058-9	1067-11	
	중앙시장3길	버드나무3길	24	2	1060-57	1020-63	
	중앙시장4길	버드나무4길	21	2	1066-88	1066-101	
골목길	다사랑1길	중앙시장길	38	2	1035-12	1068-10	
	다사랑2길	중앙시장1길	48	2	1038-28	1069-5	
	다사랑3길	중앙시장2길	20	2	1072-12	1075-46	
	다사랑4길	다사랑1길	27	1	1033-15	1075-104	

□ 소요예산 : 4,677천원(도로명판 : 1,800천원, 건물번호판 : 2,877천원)

□ 도로현황 : 별첨

